

고흥군의회의 공고 제2024-41호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의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우리 군 청소년이 일일 군의원이 되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 등의 역할 등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자 함. 또한 고흥군의회의 청소년의회 운영의 계속성과 관리·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의회 등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나.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청소년의회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청소년의회 지원 및 제안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마. 청소년의회 표창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2024. 12. 3. ~ 2024. 12. 9.(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061-830-5032, 팩스: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흥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흥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 관내 청소년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신청)** ①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는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③ 의장은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고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관내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 시설 사용
2.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
3.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의정활동과 청소년의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고흥군의회 표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흥군수 및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

고흥군의회는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대표자(개인) 주소
-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청소년의회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소년의회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귀 기관에서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흥군의회 의장 귀하**



#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_\_\_\_\_

○ 전 화 번 호: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